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4.22. ~ 6.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 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6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 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